

대학성과·IR센터 규정

2014. 11. 01. 최초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18. 10. 01. 부분개정
 2021. 07. 01. 부분개정
 2023. 10. 0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2024. 11. 08. 부분개정
 2025. 04. 01. 부분개정
 2025. 12. 01. 부분개정
 2026. 09. 07.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대학성과·IR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8.10.01., 2024.03.01., 2024.11.08.>

제2조(목적) 본 센터는 대내외 대학평가·인증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의 질 보장과 지속적 개선, 표준화된 교육환경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
3.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평가·진단의 자체평가<개정 2018.10.01.>
4. 학문분야평가인증 지원
5. 기타 본 센터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센터장
- ②삭제<개정 2025.04.01.>
- ③위원<개정 2024.03.01., 2026.09.07.>
- ④행정인력

제5조(구성원 업무 등) ①센터장의 자격은 대학의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0.01., 2025.12.01..>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2.01.>

③위원은 대내외 평가·인증에 관한 편람, 매뉴얼의 연구, 분석,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자체평가를 수행한다.<개정 2024.03.01., 2026.09.07.>

④센터의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인력을 둔다.

제6조(센터 업무) 본 센터의 업무는 대학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센터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규정 제8조의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7.01.>

②<삭제 2026.09.07.>

③평가인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TFT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8조(재정) 센터의 운영 및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은 대학의 예산회계시스템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9조(연구비 등 지급) 센터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과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2021.07.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센터의 설립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규정명칭, 제1조,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규정명칭, 제1조(명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